

VERDER GROUP의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약관

필수 게시: www.verder.com/generalterms

1. 적용범위

1.1 본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약관 (이하 "약관")은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Verder International BV의 자회사 및 Verder Group 소속 JEC Co.,Ltd., (이하 "공급자")의 물품 (이하 "물품") 공급 및 서비스 (이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등이 포함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2 본 약관을 벗어나는 상이한 사항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면 계약으로 합의하거나 혹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그러한 상이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로써, 계약대상 (이하 "구매자")의 일반약관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3 이 조건들 중 1개 이상의 사항이 전부 혹은 일부 무효화되거나 달리 효력 상실되는 경우, 다른 사항들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된다. 계약당사자들은 이 조건들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할 것이다.

2. 청약 및 계약

2.1 공급자는 청약 승낙 후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제시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2 청약은 해당 청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승낙되어야 한다.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은 달력일 기준 최장 30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청약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2.3 모든 견적 및 후속 주문 및/또는 계약은 항상, 국가 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당국의 수출 허가 (즉, 승인, 일반 허가 등)를 전제로 한다. 그러한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그 어떠한 계약도 아무런 배상책임 및/또는 비용 보상 의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2.4 제공된 데이터 및/또는 견본은 구체적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참고용으로 간주될 것이며 공급자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5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물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의미한 특징이 동일하다면 해당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인도할 권리를 가진다.

3. 가격, 대금청구, 지불조건

3.1 약정 가격에는 항상 포장, 세금, 배송 및 수출통관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비용들은 별도로 명시된다 (이하 제반 비용 및 세금을 포함하여 "계약 대금"이라 총칭한다).

3.2 가격은 합의된 화폐단위로 하며 부가가치세, 판매세, 소비세 및/또는 기타 유사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3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 구매 또는 조달 비용의 총액이 10%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그 원인과는 무관하면서도 항상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공급자는 제안 및/또는 약정된 가격을 인상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3.4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구매자는 계약 대금을 대금청구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청구서는 배송시 발송될 것이다. 지불기한 엄수는 절대 중요하다.

3.5 공급자가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이행된 활동에 대하여 대금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6 여하의 대금청구서나 그것의 일부에 대하여 구매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언급한 대금청구서의 수령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며, 이의제기가 되지 않는 금액은 전부 지불한다. 제때 서면으로 제기되지 아니한 일체의 청구사항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기일 내 지불되어야 한다.

3.7 대금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구매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공급자는 적용 법정이자와 더불어 실제 추심비용 일체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도

4.1 인도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 공장에서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인코텀즈 최신판) 조건으로 한다. 부분 배송은 허용된다.

4.2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수리, 처리 또는 가공 목적으로 여하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그 인도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 공장에서 Duty Delivery Paid (DDP: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최신판) 조건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수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3 가격에 비포함된 팔레트 및 컨테이너를 포함한 포장은 공급자의 자산으로 유지되며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급자에게 반환된다.

4.4 물품 인도/서비스 수행 즉시 구매자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수하고 통상의 입고검사 및 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한다. 물품의 하자나 부족 인도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도시점에 해당 부족이나 하자를 상세히 서술한 수령증이 운송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족이나 하자에 대한 통지가 인도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다. 전술한 것이 부재할 경우, 물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수행이 본래의 온전한 조건으로 계약에 부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4.5 물품 인도 및/또는 서비스 수행 일자, 기한 혹은 기간은 공급자가 서면 확인을 행하고 구매자가 선불 등을 포함한 제반 약정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발효된다.

4.6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일자, 기한 또는 기간은 최선의 추정치로서 근사치에 해당할 뿐이다. 그와 같은 일자, 기한 또는 기간은 절체절명한 시한이 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든 시한은 계약의 절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인도 지체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 공급자의 배상책임은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대금의 최대 2.5%까지로 한정된다.

4.7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일자, 기한 또는 기간은 구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연장될 것이다.

4.8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인도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 공급자는 모든 후속 비용 (예컨대 보관비, 인력동원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구매자와 함께 공급자의

자체 생산일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인도일을 결정한다. 그와 같이 새로 정해진 인도일이 본래의 인도일보다 2개월을 초과하는 나중으로 정해지면 공급자는 계약약수 전부를 완전하게 대금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구매자는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5. 설치, 시운전, 서비스

5.1 물품을 인도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이 합의되었거나, 혹은 시운전이나 설치를 포함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제 5.2 조항이 적용된다.

5.2 활동 수행 개시 전 및 활동 수행 중:

- a) 물품과 더불어 모든 부품 및 자재에 대한 위험은, 공급자 공장에서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조건으로 사실적 인도가 행해진 시점 이후로 구매자 부담이다.
- b) 구매자는 설치 및 시운전이 그 어떤 추가 조달이나 설비의 필요 없이 수행될 수 있게끔 구매자 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책임진다.
- c) 공급자는 그 어떤 기초공사, 토목공사, 철거 및/또는 기존 장비의 해체나 제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d) 구매자는 에너지, 물, 공기, 공구, 호이트스 및 크레인 장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필요 소모품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e) 구매자는 토목, 시공 및 전기 기술 작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준비작업이 제때 완료되게끔 한다.
- f) 공급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 3 자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g) 구매자는 정부당국의 준거 규정 및 안전 요구사항은 물론, 여타 강제 법령이 준수되게끔 한다.
- h) 구매자는 설치 및 시운전 개시 시점과 진행 도중에 물품이 적시적소에 비치되어 있게끔 한다.
- i) 구매자는 구매자의 부지에서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이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가 방해나 간섭 없이 모든 필요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작동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보장한다. 활동이 공급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는 동원(해체) 비용을 포함한, 제반 추가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여하의 약정 완료일은 연장된다.
- j) 완료는 물품이 기계적으로 완전하고 시운전이 된 경우 및/또는 서비스가 완전하게 수행된 경우에 발생한다. 구매자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시운전되는 시점에 검수할 권리가 있다.
- k) 완료는 완료증명서로 문서화한다. 여하의 보완사항 및/또는 비교사항은 기록된다. 구매자는 완료증명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물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 l) 물품의 실제 작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이나 결함은 물품이 시운전되고 완료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부분이나 결함은 공급자에 의해 적절한 시일 내에 시정된다.
- m) 시운전 및/또는 완료가 공급자의 소관 및/또는 책임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구매자에서 서면 통지한다. 그러한 경우, 완료는 그러한 서면 통지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권원 및 위험 이전

6.1 제 6.2조항에 따라, 물품에 대한 권원 및 사용권은 인도와 함께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6.2 법률상 허용되는 한, 공급자는 모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유보한다. 완납 전까지 구매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여타의 법적 권리를 제 3자에게 전매, 이전, 양도, 질권설정 또는 증여할 권리가 없다. 전술한 바와 무관하게, 인도 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구매자는 물품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 전위험담보조건으로 부보한다.

6.3 권원의 유보가 적용되는 물품이 다른 품목과 조립되거나 결합되고, 그 결과 공급자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경우, 구매자는 조립 또는 결합된 품목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물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만큼 공급자에게 이전한다.

6.4 공급자의 공동소유지분이 있는 물품이 매도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공동소유권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판매대금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구매자는 그와 같은 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다.

6.5 앞선 조항들에 명시된 권원의 유보가 준거법 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할 경우, 의도하는 권원의 유보의 취지에 가장 근사한 담보가 공급자에게 부여된다.

7. 보증

7.1 적용 보증기간 (이하 “보증기간”) 은 물품의 인도 시점 혹은 서비스의 수행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이다.

7.2 공급자는 물품의 완전한 권원이 인도되고 물품이 사용되지 않은 신상품임을 보증하고, 더불어 보증기간 동안에, 재료, 시공기술, 설계에 하자가 없고 계약상 사양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나아가,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가 건전 기술 관례 (Sound Engineering Practice) 및 적절한 주의의무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서비스는 특정 결과의 도출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7.3 보증 면책: 공급자는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여타의 모든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여타의 모든 보증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일체의 보증을 부인한다.

7.4 발열체, 온도소자, 세라믹, 멤브레인, 고무 및 유리 부품은 그 성질상 사용자로 인한 손상이나 잘못된 취급 및/또는 보관으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므로, 구매자가 해당 손상이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하의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7.5 공급자가 수행 또는 제공한 검수, 자문 및/또는 유사한 서비스는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하의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7.6 이 보증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 원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함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작동 및/또는 유지보수 지시사항 비준수;
- b. 정상적 마모 및 노후;
- c. 통상의 입고 및 품질검사와 점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결함;
- d.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보관, 사용 또는 취급으로 인하여 초래된 물품 손상이나 악화;
- e.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오류이거나, 불완전한 정보;
- f. 구매자 혹은 제 3 자가 행한 수리;
- g. 공급자가 공급하거나 인증하지 아니한 예비부품, 소모품 또는 자재.

7.7 최초 사용 후, 소모품과 부속품은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7.8 공급자가 공급하였거나 및/또는 가용할 수 있게끔 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물품을 실제 사양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서만 보증된다. 소프트웨어가 유지보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업데이트되지 아니하였거나 및/또는 사용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알맞지 않는 하드웨어에 사용되거나 저장된 경우 여하의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결함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와 함께 협의하여 성실히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7.9 통상적인 입고 및 품질검사와 점검을 통해 발견 불가능한, 보증기간 내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발생하면, 공급자는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 재량으로, 물품의 수리나 교체 및/또는 서비스의 재수행을 행함으로써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하 “복구”). 이 복구의 의무는 유일하고 배타적이며, 모든 묵시적 보증이나 보장 및/또는 법정 보증이나 보장을 대체 및 배제함은 물론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불이행의 결과로 구매자에게 발생한 추가 손해 및/또는 비용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배제한다.

7.10 복구 후에는, 수리 또는 교체된 부품 혹은 재수행된 서비스에 대하여 복구일로부터 12개월간 새로운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모든 새로운 보증기간은 항상 본래의 인도일 및/또는 본래의 서비스 수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하면 최종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더이상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11 결함 및/또는 보증이나 보장 불충족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은 결함 발견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럼에도 항상 결함 발견 시점으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복구에 대한 구매자의 모든 권리 및/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결함이 제때 보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실된다. 준거법 상 허용되는 한, 모든 적용 시효는 배상 책임을 초래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으로 단축된다.

7.12 물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경우 (예: 물품 설치공사), 물품에 접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구매자 부담으로 한다.

7.13 구매자가 공급된 물품 및/또는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 물품 및/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의 소재지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추가 발생 비용은 구매자 부담으로 한다.

7.14 보고된 결함에 관한 조사가 있고 나서, 그러한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자는 모든 조사 혹은 여타의 다른 발생 비용을 공급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해산, 유예, 종료

8.1 구매자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계약상 다른 청구권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신의 추가 의무 이행을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다.

8.2 공급자가 구매자의 지불능력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모든 계약상 의무를 유예할 권리를 가진다.

8.3 일방 당사자가 관련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적절한 시일 내에 의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손해배상의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8.4 구매자의 사업 중단, 법적 분쟁, 청산, 파산 (신청) 의 경우 및/또는 구매자나 구매자의 소재 국가가 정한 제재대상 목록에 오를 경우,

공급자는 여하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의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8.5 상기와 같이 공급자가 의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모든 후속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배상책임

9.1 공급자는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여타의 다른 법적 요구사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된 구매자의 손해, 대금지급, 손실, 비용, 경비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9.2 준거법상 불허되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제기에 대한 모든 적용 법정 시효는 물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수행 후 12개월간으로 단축한다.

9.3 모든 계약, 물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수행에 기인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한 공급자의 최대 배상책임은, 계약에 근거하든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다른 것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 포함) 에 근거하든, 공급자의 책임보험 하에 실지급되는 손해액 또는 계약가의 100%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로 한정한다.

9.4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급자는 이익이나 매출의 일실, 계약의 일실, 다운타임 비용이나 혹은 구매자의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결과적, 간접 손해,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9.5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급자는 기초 저작물, 문서, 도면 및/또는 디자인이 구매자나 구매자를 대리한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정해지거나 및/또는 자문된 경우 그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그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한다.

9.6 상기의 면책 및 책임제한은 계약에 근거하든, 불법행위 또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르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계약상 상이한 여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9.7 계약당사자들, 각 당사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다른 제 3자에게는 권리나 구제수단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8 상기의 배상책임의 제한 및/또는 배제는 공급자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악행의 경우, 공법상의 위반이나 신체상해 또 사망의 경우에 그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9.9 이 책임의 제한은 공급자의 계약 체결 의향을 위한 물적 토대로서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의도하는 위험 분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것이 없었다면 공급자는 부과된 가격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임 제한에 기초하여, 공급자는 개별 청구에 대한 공급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구매자는 여하의 초과 손실에 대한 구매자 나름의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다.

10. 구매자의 보증

구매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 기술 및/또는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혹은 그와 같은 자를 목적으로 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을 확인 및 보증한다:

- 국내 당국 또는 해외 당국 (예: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및/또는 국제연합) 이 제재대상으로 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자, 특히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크림/세바스토폴 등, 다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

- 국내 당국 또는 해외 당국 (즉,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및/또는 국제연합)이 제재대상자로 목록에 등록된 자;

다만, 관계당국으로부터의 특정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

11. 데이터 보호

11.1 각 당사자가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처리 당사자에게 유일하게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데이터의 내용, 사용 및/또는 처리가 위법하지 아니하며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EU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적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나아가 각 당사자는 권한 정보의 사용, 저장 및/또는 처리가 비밀로 간주되며 비밀유지 및 법적 권한 (privilege) 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준거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보장한다.

12. 불가항력

12.1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위반의 책임은 그 어떤 당사자도 지지 아니한다.

12.2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여하의 상황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속적 혹은 일시적으로 저해하는 상황은 물론,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는데, 전쟁 (전쟁 위험도 포함), 폭동, 파업, 직장폐쇄 및 지진, 홍수, 제명된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을 망라한 자연재해, 운송 난제, 화재, 테러, 팬데믹 (WHO 의 팬데믹 선언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업자의 파산 및 본건 공급자의 사업 혹은 본건 공급자의 공급업자들의 사업에 여타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12.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는, 법적 개입 없이, 최장 6(육)개월까지 계약 이행을 연기하거나, 혹은 구매자에게 여하의 보상을 지급할 의무 없이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3.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13.1 당사자들은 각자의 의무 이행 도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여하의 모든 영업 및 기술 정보, 노하우, 예컨대 제품, 가격, 고객, 공급자들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않는 정보 (이하 "비밀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13.2 여하의 계약 이행 중 발생하거나 및/또는 공급자에 의해 인도된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예컨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디자인권, 노하우권, 특허권 및 발명, 정보, 콘텐츠 혹은 프로세스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리 (어떤 경우에도 등록 여부는 무관하며 해당 권리에 대한 모든 출원 권리도 포함됨) 는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공급자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및/또는 그러한 재산이 된다. 모든 지식재산권 및/또는 비밀정보를 내포하는 일체의 것은 공급자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및/또는 그러한 재산이 되며, 공급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복제할 수 없으며, 제 3 자에게 노출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고, 이는 구매자가 그러한 재산의 생성이나 제공에 대하여 여타 비용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구매자는 그러한 내포물에 대한 공급자의 최초 서면 요청이 있으면 이를 즉시 반납한다.

13.3 공급자는 구매자를 참조로 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13.4 만일 의 경우 필요하다면, 공급자는 이에 따라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14. 기타

14.1 본 일반약관 및/또는 여하한 후속 계약의 여하한 조항을 공급자가 포기하더라도 이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정하여 공급자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아니하다. 여하한 계약에서 기인하는 여하한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가, 혹은 그러한 행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행사의 포기로 작용하거나, 그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하의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의 단독 혹은 부분적 행사는 이에 따라 해당 권리의 여하한 여타 다른 추가적 행사는 여하한 여타 다른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아니한다.

14.2 본 약관 및/또는 여하한 후속 계약의 여하한 조건이나 조항이 여하한 사법관할에서 무효 또는 불법이거나 혹은 집행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무효성, 불법성 혹은 집행불가능성은 본 계약의 여타의 다른 조건이나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건이나 조항을 여하의 다른 사법관할에서 무효화시키거나 집행불가능하게 하지 아니한다.

14.3 본 일반약관 및/또는 여하한 후속 계약의 조항이 그 성질상 해당 기한을 경과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 경우 그 조항은 본 일반약관 및/또는 여하한 후속 계약상의 여하한 종료 또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될 것이다.

15. 준거법 및 관할법원

15.1 본 일반약관을 비롯한 여하한 후속 계약 혹은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는 오로지 공급자의 등록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현지의 국제사법 원칙은 배제된다.

15.2 계약당사자는 이에 계약관계에 관한 모든 분쟁이 공급자의 등록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전속 관할됨에 합의하고 이 합의는 취소할 수 없다.

15.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혹은 비엔나 협약) 의 적용은 배제된다.